

##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뵈주와의 자매결연제결안

#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  
2000. 4. 19.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0년 4월 11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72회 임시회

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0. 4. 19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경국)

- '99년 10월에 도의회 사전보고후 '99년 11월에 도지사를 비롯한 충청북도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추뵈주를 방문, 자매결연의향서 체결과 수출상담회개최등을 통해 마련한 남미진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
- 또한,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형성과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능력을 제고시키고 특히, 지금까지 일본,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시켜 국제교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골자

- 자매결연체결

- 체결예정 : 2000. 5월
- 대상도시 : 아르헨티나 추부주
- 체결방법 : 추부주 대표단(주지사외)초청, 협정서 서명·교환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해영)

-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부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투자 및 경제통상 등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
-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양 지역이 원격지이기 때문에 과도한 물류비용이 예상되어 수출입 경쟁력이 우려되나

-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아니라 일본,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공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- ◎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부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  
- 충청북도지사 제출

##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州와의 자매결연체결(안)

- 체결예정일 : 2000. 5
  
- 대상도시 : 아르헨티나 추붓주
  
- 체결방법 : 추붓주 대표단초청
  
- 체결장소 : 충청북도
  
- 체결내용 : 자매결연협정서(붙임) 서명교환
  
- 서명자 : 충청북도지사↔추붓주지사

##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간 자매결연협정서(안)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1. 양 지방정부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주민의 친선과 교류를 더욱 발전시킨다.
2. 양 지방정부는 상호호혜의 기본원칙 위에서 행정, 경제, 통상, 문화, 체육, 관광 등 모든 영역의 우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.
3. 양 지방정부는 투자 및 경제통상, 과학기술 부문과 기업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.
4. 양 지방정부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한다.
5. 양 지방정부는 위와 같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.

본 협정서는 2000년 5월 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하고 양국어로 작성하여 이를 양 지방정부에 보존한다.

이 원 종  
대한민국  
충청북도지사

호세 루이스 리쓰르메  
아르헨티나  
추붓주지사

**관련법령(발췌)**

● **지방자치법 [第3節 權 限]**

第35條(地方議會의 議決事項)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. <改正94.3.16. 99.8.31>

1~9 내용 생략

10.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

● **지방자치법 시행령**

제15조의 4(교류협력의 범위) 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“교류협력”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유치·개최 등을 말한다. [본조신설 99. 12. 31]

● **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[행자부훈령제47호]**

제3조(자매결연 체결) ①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기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.

②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.